

# 인공신장실 운영과 관련한 의료법 실무

법무법인 세승

현 두 룬

## 목차

- 1. 행정처분의 유형과 사유
  - 자격정지
  - 면허 취소
  - 업무정지
- 2. 주된 의료법 위반 사례
  - 의료기관 불법개설
  - 환자 유인
  - 진료비 허위청구
  - 리베이트

## I. 행정처분 유형과 사유

### 1. 자격 정지 처분(의료법 제66조)

#### • 제66조 (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 할 수 있다.

1) 음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의료법 시행령 32조)

-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 2. 비도덕적 진료행위
-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 4. 과잉진료 및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 5. 진득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음품을 수수하는 행위
- 6. 다른 의료기관 이용하려는 환자를 자기 의료기관에 유인
- 7. 약국과의 담합행위

\* 2011년 의료법 신설. 중앙회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 요청할 수 있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개설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한 경우
- 의료기관 중독개설



3) 진단서·검안서, 증명서, 진료기록부 관련

-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발행 : 자격정지 2월
- 거짓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발급 : 자격정지 3월
- 정당한 이유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발급 요청 거부 : 자격정지 1월
-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 자격정지 1월
  - \* 2012. 4. 부터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의 경우에도 영사처벌
- 진료기록부 미작성, 미보관 : 자격정지 1월
- 진료기록부 부실 기재 : 자격정지 15일
- 진료기록부에 서명 누락 : 경고

4)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편허받은 사람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 자격정지 3월 (업무정지 3개월 병과)

5)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 자격정지 15일

6) 진료비 허위 청구

◆ 진료비들 거짓 청구원 경우의 처분기준(2004. 3. 이후) ◆

(단위 : 원)

월평균 거짓청구금액		거짓 청구 비율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보건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1% 이상 2% 미만	1% 이상 2% 미만	1% 이상 2% 미만	1% 이상 2% 미만	5% 이상
12만원 미만	4만원 미만	-	-	1	2	3	4	5
12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4만원 이상 7만원 미만	-	1	2	3	4	5	6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	2	3	4	5	6	7
4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	3	4	5	6	7	8
16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	4	5	6	7	8	9
7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	5	6	7	8	9	10
2,50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5	6	7	8	9	10	

◆ 거짓 청구비율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총 거짓청구금액	행정처분기준
	자격 정지 10개월
1,7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 정지 9개월
1,2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자격 정지 8개월
8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자격 정지 7개월
55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자격 정지 6개월
350만원 이상 ~ 550만원 미만	자격 정지 5개월
2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자격 정지 4개월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자격 정지 3개월
3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자격 정지 2개월
30만원 미만	자격 정지 1개월

- \* 2004. 3. 이전에는 허위 청구금액이나 비율에 상관없이 자격정지 2월 처분
- \* 자격정지기간 중에는 의료업을 할 수 없음(의료법 제66조 제3항)

7) 의료광고 규정 위반

- 소비자 현혹 광고, 다른 의료인 비방광고, 기사성 광고 : 자격정지 1월
- 사실상의 받지 않은 광고,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자격정지 15일, 3차 위반 : 자격정지 1월
- 과대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광고 : 자격정지 1월
- 허위 광고 : 자격정지 2월
- 다른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 자격정지 1월

\* 2011. 8. 의료법 개정으로, 2012. 4. 부터는 업무정지처분만 가능.

8) 리베이트 수수 : 1년 이내의 자격정지(벌금액수에 따라 2 - 12월)

9) 기타 의료법 위반 사항 : 의료관계정척분기준규칙(보건복지부령)

2. 면허 취소(제65조)

\*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면허 취소 사유

-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 선고 (필요적 면허 취소)
-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태아 성감별(2008. 7.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과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 정지 3월로 변경)
- 면허증 대여

2) 재교부 금지 기간

-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 받은 경우 : 2년
- 면허증 대여 : 2년
- 의료관련 법령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 형벌 확정 : 3년

3. 의료기관 업무정지 및 취소(제64조)

\*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처분 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 (판할 보건소)

2) 처분 사유

- 개설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 투자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 응급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지도와 명령 위반
- 의료광고 규정 위반
- 시정명령 위반
- 약사와의 담합행위
- 진료비 허위 청구

3) 과징금 대체 가능

- 업무정지처분 대신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과징금 대체는 3회까지만 가능. (진료비 허위 청구는 대체 불가)
- 업무정지 1월 = 30일
-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연간총수입금액 : 처분 전연도의 의료업으로 발생한 총소득금액을 의미.

II. 주된 의료법 위반 사례

## 1. 의료기관 불법 개설

### •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위반 시 }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자격정지 3월

#### ◆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 개설한 경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판결 등 :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되고, 그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의료인이 비의료인과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 의료인 역시 의료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

####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975 판결 :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본문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정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 제30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자질요건인 명의를 빌려 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 자신의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업무를 지휘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위하여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다른 의사의 명의의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투자자격을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비록 그 개설명의자인 다른 의사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위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

#### ◆ '면허증 대여' 외의 구별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837 판결)

- “면허증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
- 의료인이 무자격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그 의료인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 데에 자신의 면허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 개설 후 의료인 자신이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의사로 그러하였고, 또 실제로 개설 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바 없다면,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면허증 대여 : 면허취소 사유

#### ◆ 의료법을 위반한 동업약정의 법률적 효력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 ① 사안의 내용

- 원고(A)는 신장병 치료약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주식회사), 피고(B)는 혈액투석 전문의
- 동업계약, 수입배분 약정, 영업금지약정  
(계약 해지 시 피고는 4년간 병원으로부터 20km 이내에 신장병 치료센터를 개설하지 않는다)
- 원고와 피고 쌍방 간 병원 운영과 관련한 불화 발생
- 원고는 피고에게 동업계약 해지 등고
- 피고가 위 병원 인근에 다른 내과의원 개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영업금지 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② 판결 내용 :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은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 ◆ 불법개설에 관한 의사의 책임과 불이익

- 형사처벌 및 3개월 면허정지처분.
- 불법개설로 인한 진료비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부당청구' 에 해당  
→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 기타 의료법 위반에 위약(무면허의료행위, 허위·과대광고, 환자 유인 등)  
→ 이로 인한 모든 형사적, 행정적 책임은 일단 개설자인 의사에게 귀속.
- 무자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도 곤란.
- 병원 의료장비, 시설 등에 대한 권리 행사가 곤란
- 직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지급도 개설자인 의사의 책임.

#### ◆ 2011. 8. 26. 의협신문기사

▶ 의원·병원 악몽의 사무장병원 '난 이렇게 당했다'  
[내부고발 의사 2명 전격인터뷰] “모든 끝 다 날려… 남은 건 빛더미 뿐”

##### <최근 개발된 사무장병원 주요 사건>

- ▶ 2010년 12월 27일 부산경찰청, 6억 6000만원 급여청구한 사무장병원 적발
- ▶ 2월 17일 동두천경찰서 4억2000여만원 부당청구한 요양병원 사무장 등 구속
- ▶ 5월 4일 전남지방경찰청, 보람금 허위 청구로 6000만원 편취한 한남병원 사무장 입건
- ▶ 5월 경기도 동두천경찰청, 49억여원 부당청구한 사무장병원 적발
- ▶ 7월 26일 광주지방경찰청, 통원환자 100명에게 허위입원확인서 발급한 사무장병원 원장과 사무장 구속영장 청구
- ▶ 7월 28일 서울지검, 강남구 D성형외과 사무장과 공동정범 등 3명 약식기소.  
사무장 소유의 경영지원회사(MSO)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 ▶ 7월 31일 부산지검, 사무장병원 운영자 28명에게 의료법인 명의 빌려준 법인대표와 브로커·사무장 등 구속기소. 기업형 사무장병원 첫 적발.

## 2. 환자 유인

### • 의료법 제27조 (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㉓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원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시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 시 } (형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자격정지 2월

• 문제점 : 업무정지처분 유정이 없다 보니, 법인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약.

## 가. 환자 본인부담금 감면

### ◆ 비급여대상에 대한 진료비 할인은 가능

1) 병원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품 스페셜링 기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 해 준다는 내용의 여드름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다가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진료비 할인 및 환자 유인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06. 2. 28. 선고2007도 10542 사건)

• 의료법 제25조 제3항이 면제 또는 할인을 금지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일부 부담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할인광고는 그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보면, 이러한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질 균형을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환자 유인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병원 행정부장)이 병원장의 승인을 받고 \*\*층합에서 사람들에게 "oo병원에서 계약금 3만원으로 예약을 하면 시중보다 한 액인 20만 원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전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은 사례.

•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 oo병원의 행정부장인 피고인 1은 병원장인 피고인 2의 허락을 받고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을 방문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을 홍보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이 의료기관 oo병원으로부터 따로 음품을 제공받은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바, 의료기관의 승인 하에 행정부장의 자격으로 행해진 피고인 1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라 아니라 곧 의료기관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의료기관 스스로 환자를 유치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주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환자의 '소개·알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의료기관 oo병원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환자나 구체적행위자인 피고인 1에게 음품이 제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로부터 예약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또한 이러한 행위와 의료시장의 질서질 균형을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여 같은 항의 환자의 '유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이메일 발송 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환경)

• 피고인들이 인터넷 카페의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병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송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함으로써 스스로 정보특성을 위해 해당 병원의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이고, 전자메일은 특정 개인들에 대한 수신과 동일한 수단으로서 그 직접성이나 대면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광고가 담긴 전자메일을 발송한 인터넷 카페의 회원의 수는 약 30만 명에 이르는 데 이 중 대다수의 회원은 자신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형할 수밖에 없는 점.

• 실제로 위 이벤트 응모를 통해 피고인 병원에서 시술받은 환자가 4명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카페 회원 중 총 500여 명이 이벤트 광고에 응모하였고.

•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수단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의료인으로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과도한 방식의 광고는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불러 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들이 약 30만 명에게 전자메일을 발송하여 이벤트 광고를 한 것은 의료시장의 질서질 균형을 근본적으로 해할 위험과 우려가 있어 환자 유인에 해당한다.

## 나. 금품 제공

- 음전, 무료시술권, 상품권, 이벤트 경품 제공 → 환자 유인  
- 개업식 사은품, 마일리지 적립, 카드회사와 제휴, 특정 회사 직원들에게만 진료비 할인 ⇒ ?

## 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 제공

라.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90 :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계시판을 이용하여 낙태 관련 상담을 하면서 활발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낙태시술을 해줄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병원을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안내한 행위가 주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정한 '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마. 경쟁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 기준

### ◆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 대상 범위

1) 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체 중 납부금액이 하위 20% 범위 내에 속하는 세대의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 1-3등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2) 국가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의해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 받은 자

### ◆ 교통편의 제공행위 범위

1) 동일 지역 안에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 없고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대중교통편(버스, 열차)이 1일 8회(편도) 이하의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과 의료기관 사이를 운행하는 경우  
2) 동일 지역 안에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 없고 의료기관과 제일 가까운 경유장 사이에 대중교통편이 없는 지역으로서, 제일 가까운 경유장과 의료기관 사이를 운행하는 경우  
3) 타인의 도움없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신체, 정신상의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3. 진료비 부당청구의 관련하여

#### 가. 부당청구란

-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사위(詐畵)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추상적으로 규정.
- 판례는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진료수가 등을 위반·초과하여 보험자·보험자단체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만이 아니라,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기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수진자 본인과 사이에 보험비급여로 하기로 상호합의하여 그 진료비용 등을 수진자 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도 위각 기준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나. 부당청구의 유형

- ▶ 부당청구의 유형은 결국 판례에 의해서 형성.
- ▶ 현재 실무와 판례는 부당청구의 유형을 넓게 인정하는 추세.

#### (1) 요양급여기준 위반 청구

- 식약청장의 허가 범위를 벗어난 약 처방
- 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대 별도 청구
- 검사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연구소에 검사 의뢰한 경우
- 산과인과 외원 상급병실료 부당청구
- 상근하지 아니한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행위

#### (2) 허위 청구 :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면서도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으로 진료비를 청구

- 입·내원 일수 증인 청구
-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청구
-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급여상병 등을 기재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

#### (3) 의료관계 법령 위반 청구

- 환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
- 의사가 환자들 직접 보지 않고 전화 상담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 의료기관 개설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인 진료봉 한 경우
- 간호조무사의 심전도 검사 행위
- 방사선사 이외의 자가 방사선 촬영을 보조한 경우
-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허용 사유가 아닌데도 낙태 수술을 하고 원외처방전 발행한 경우
-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의 진료행위

#### (4) 기타

- 소아과 의원에서 고가약(디페인 주사제) 투여하고도 삭감을 유려하여 동일 성분의 저가약(법피린 에스)을 투여한 것으로 청구
-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인후두소작술 등을 실시하고도 삭감을 유려하여, 보험금단에 청구하지 않고 대신 환자 본인부담금 부분만 청구(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다. 부당청구의 효과

#### (1) 부당이득 금액 환수처분 - 건강보험공단

#####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 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2)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 보건복지부장관

##### \* 제85조(과징금 등)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3) 허위청구의 경우

- ▶ 의사면허 정지(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 구체적인 기준은 월평균 부담금액과 부담비율에 따라 결정
- ▶ 의사면허 취소(의료법 제65조 제1항)
  - 자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을 때 - 필요적 취소
  - 재요부에 관한 규정이 없음.
- ▶ 의료기관 업무정지
  - 면허정지시 정지기간 중 의료기관의 업무도 당연 정지(제66조 제3항)
  - 과징금 대체 곤란
- ▶ 평단 공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3)
  - 편취금액이 1500만원 이상 또는 허위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
- ▶ 자기죄로 형사 고발
  - \* 보건복지부 내부 고발기준 : 요양기관 중별 구분없이 허위청구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기관(2008. 2. 부처 직용)

### 4. 리베이트 관련

#### 가. 의료법 개정 전(형법 적용)

#### ▶ 공중의료기관 중사자 : 뇌물죄로 처벌

##### \* 제129조(수액, 사전수액)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 제134조(물주, 중점)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 민간 의료기관 중사자 : 배임수재죄로 처벌

##### \* 형법 제357조(배임수재죄)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지 못하는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 민간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법인) : 처벌 불가

\* 공중정거래법상의 공중정거래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의제출 강요행위가 입증되어야 처벌 가능.

나. 의료법 개정 이후 [2010. 5. 27. 개정, 시행 2010.11.28]

•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재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의,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습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재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8조의2(벌칙) 제23조의2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행정처분 : 1년 이내의 자격정지(제66조 1항 9호)

다. 효과 및 대응방안

-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리베이트 수수는 자체
- 견본품 제공, 학습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는 가능.
- 시행 시기 : 2010. 11. 28. (소급 적용은 할 수 없음)
- 의료법 시행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및 공정거래법만 적용
- 실거래가 위반으로 인한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위 의료법 규정과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환수 및 업무정지)
- 이의제공강요행위가 입증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
- 과세관청에 대한 세무 신고도 우려해야 함.

라. 대학병원 교수 리베이트 사건

- 대학병원 교수들이 제약사로부터 금품과 골프접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수재죄에 기소된 사건(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10노 676 판결)
-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 부분 :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식상, 명목상으로만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죄)
- 선물, 골프접대비, 회식비 부분(1인당 60만원 - 70만원) :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이며,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죄)

마. PMS의 합법성 판단 기준(서울고등법원)

- ▶ 제약회사의 입장
  - PMS 연구목적이 적정하고 필요한가,
  - 조사증례수 및 증례보고서가 연구목적에 부합한가,
  - 조사기관인 병원의 선정방식이 적정하고 공정한가,
  - PMS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존재하는가,
  - PMS 연구비의 지급과정에 비추어 해당 의약품의 선택 및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가,
  - PMS 의뢰와 의약품 판매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가
- ▶ 의사의 입장
  - PMS 연구목적이 의학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인가,
  - PMS 수행과정과 방법이 적정하고 결과가 충실한가,
  - PMS 운영수행의 대가로서 운영비가 적정한가